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을 "훈령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을 "훈령"으로 한다.

제3조 중 "규정"을 "훈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야간에"를 "상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90°이상"을 "90°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면 또는 위험표지판"을 "전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를 "표시할 수 있으며, 기본규격은 별표 2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연락처"를 "연락처, 사물주소(위·경도 좌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방법"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제3호"를 "제2항제3호"로 한다.

제7조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 시"를 "필요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로 한다.

제10조 중 "규정은"을 "훈령은"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의 구명조끼의 세부내용란 제1호 중 "한다"를 "한다.(70kg 초과하는 체중에도 적응성 있는 부력 성능을 가질 것)"로 하고, 같은 표 비교가목 중 "사고발생"을 "사고 발생"으로 하며, 같은 비교 나목 중 "관련된"을 "관련된"으로 한다.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중전의 별표 2)기호(○)의 사물주소(위·경도 좌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신규로 설치·교체하는 수난인명구조장비함부터 적용한다.

인명구조장비 기본규격 (제5조제3항 관련)

장비명	형 상	세부내용
구명조끼		1. 외형은 조끼형태로 반사 성능이 있는 재질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공기주입 장치 없이 물에 뜨는 성질을 가져야 한다. (70kg 초과하는 체중에도 적응성 있는 부력 성능을 가질 것) ※ 물에 24시간 이상 잠긴 후에도 95% 부력 유지 2. 외부의 도움 없이 혼자 착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3. 고정방식은 매듭을 묶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고정방식을 가져야 한다. 4. 한쪽 방향으로만 또는 안쪽에서 밖으로 명백히 착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1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뛰어 들더라도 구명조끼가 벗겨지거나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소재, 무게, 부력 성능, 착용 적합 사이즈 등의 제원을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제품에 표기하여야 한다.
구명튜브		1. 외형은 튜브형태로 외부 공기 주입 없이 물에 뜨는 성질을 가져야 한다. ※ 부력 성능을 외면에 표기할 것 2. 반사 성능이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여야 한다. 3. 염분 및 습기에 의한 부식이 없어야 한다. 4. 구명줄을 쉽게 결속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5. 구명튜브를 던지거나 조난자가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측면에는 끈이 달려 있어야 한다.
구명줄		1. 가볍고 물에 뜨는 성질을 가져야 한다. 2. 수상에서도 식별이 용이한 색상이어야 한다. 3. 두께는 6mm이상, 길이는 20m 이상이어야 한다. 4. 인장강도는 1,000kg 이상 이어야 한다.

<비 고>

가. 지역 특성, 사고 발생 빈도 및 유형 등에 따라 위 규격을 포함하여 세부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제5조 제2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비치하는 인명구조장비의 종류, 수량, 규격 등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따로 정한다.

※ 형상에 관련된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정 규격과 관련이 없음

[별표 2]

수난인명구조장비함 기본규격 (제6조제2항 관련)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전면)

인명구조장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예시)

1



구조자는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Wear a life jacke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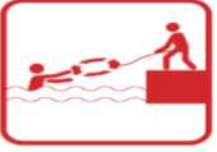
구명튜브를 꺼낸다.
Take out a life ring.

3



구명줄과 구명튜브를 연결한 후 던진다.
Connect a rope and life ring, throw it.

4



물에 빠진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구조한다.
Drag out the drowning person to the safe place.

1. 본 함은 수난사고 발생 시 구조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인명구조장비함입니다.
2.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 긴급하게 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줄을 사용할 경우 제품에 표기된 장비제원,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확인한 후 인명구조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구조장비는 인명구조장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며 파손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 000-000-0000

○○소방서장 000-000-0000

긴급신고



사물주소

(위·경도 자표)

1. 재질 :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견고하여야 하며 쉽게 변형되지 않는 구조
2. 색상
 - 가. 표지판명 : 바탕은 노란색, 글자는 빨간색
 - 나. 안내글 : 바탕은 백색, 글자는 검정색
 - 다. 기관명 및 연락처 : 바탕은 노란색, 글자는 검정색
3. 반사재료 :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우수한 반사 재료를 사용하거나 야간 조명 장치를 설치하여 시인성이 좋아야 함
4. 비고 : 지역의 특성 및 사고발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추가삽입 가능

위험표지판의 기본규격 (제7조 관련)

위험안내 표지판			
이 지역은 급격한 수심변화로 익사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이오니 안전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해양경찰서장)	000-000-0000 000-000-0000	긴급신고 	사물주소 (위·경도 좌표)

1. 재질 :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견고하여야 하며 쉽게 변형되지 않는 구조
2. 색상
 - 가. 표지판명 : 바탕은 노란색, 글자는 검정색
 - 나. 경고글 : 바탕은 백색, 글자는 검정색
 - 다. 기관명 및 연락처 : 바탕은 백색, 글자는 검정색
3. 글꼴
 - 가. 위험안내 표지판 : HY견고딕(검정색)
 - 나. 경 고 글 : HY울릉도M(검정색)
 - 다. 기관명 및 연락처 : HY견고딕(검정색)
4. 반사재료 :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우수한 반사 재료를 사용하거나 야간 조명 장치를 설치하여 시인성이 좋아야 함
5. 경고글 : 지역의 특성 및 사고발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할 것(영문 등 외국어 별도 표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u>규정</u> 은 수상에서 의 사고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누 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인명구조 장비함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훈령</u> 은 ----- ----- ----- -----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u>규정</u>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 <u>훈령</u> ----- ----- ----- 1. ~ 8.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u>규정</u> 은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난인 명구조장비함을 설치·관리할 때 적용하며, 지역 특성과 사고 발생 빈도 및 유형 등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 <u>훈령</u> ----- ----- ----- ----- ----- ----- ---
제6조(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규 격) ①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인명구조장비의 수납 등이 원활 한 구조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생 략)	제6조(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규 격)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결면에는 반사 성능이 있는 소재를 부착하거나 점멸 기능이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할 것

3. (생략)

4. 여닫이문이 있는 경우 문은 90°이상 열리는 구조일 것

5.·6. (생략)

②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전면 또는 위험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설치(또는 관리)기관명, 연락처

2. (생략)

3. 인명구조장비 사용방법

4. (생략)

③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용방법 안내문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외부에 설명을 포함한 그림문자로 표시하여야 하며, 영어 등 그 밖에 필요한 언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④ (생략)

2. -----

----- 상

시 -----

3. (현행과 같음)

4. ----- 90° 이상 -----

5.·6. (현행과 같음)

② ----- 전면-----

----- 표시할 수 있으며, 기본규격은 별표 2와 같다.

1. ----- 연락처, 사물주소(위·경도 좌표)

2. (현행과 같음)

3. -----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4.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제3호-----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위험표지판) 위험표지판은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주변에 함께 설치할 수 있으며, 기본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유지·관리) ① 제4조에 따라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한 기관은 누구나 필요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난인명구조장비함 현황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 지역 내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관리주체(시장·군수·구청장·농어촌공사장 등을 말한다.)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점검·보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

제7조(위험표지판) -----

-- 별표 3과 --.

제8조(유지·관리) ① -----

----- 필요시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별지 제1호 서식-----

-----.

③ -----

----- 말한다-----

-----.

제9조(점검·보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

<u>리 하여야</u> 하며, 2년간 보관하 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작 성·관리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10조(유효기간) 이 <u>규정은</u> 「훈 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 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 는 <u>2023년 12월 31일</u>까지 효력 을 가진다.	<u>리하여야</u>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유효기간) -- <u>훈령은</u> --- ----- ----- ----- ----- -- <u>2026년 12월 31일</u>----- -----.
---	--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수상에서의 사고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인명구조장비함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이란 수상에서의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보관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
2. "인명구조장비"란 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줄 등 인명을 구조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장비를 말한다.
3. "구명조끼"란 공기 또는 부력 성질을 가지는 재질로 채워진 장비로 물에 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를 말한다.
4. "구명튜브"란 부력을 가지는 장비로 사람이 기대어 수면에 뜰 수 있도록 돕는 장비를 말한다.
5. "구명줄"이란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직접 건네주거나 인명구조장비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줄을 말한다.
6. "위험표지판"이란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하는 장소의 사고위험성 및 금지행위를 알리는 표지판을 말한다.
7. "그림문자"이란 사물, 시설, 형태, 개념 등을 일반 대중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나타낸 문자를 말한다.
8. "관리"란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내에 비치된 인명구조장비를 상시 사

용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난인명구조 장비함을 설치·관리할 때 적용하며, 지역 특성과 사고 발생 빈도 및 유형 등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설치)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수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할 수 있다.

1.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계곡, 교량 인근
2.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지역 인근
3.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하는 장소 주변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구성) ①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인명구조 장비 보관함, 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줄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 취약성, 주변 특성,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투척용 로프 가방, 조명등, 줄사다리, 구조봉 등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비치할 수 있다.

③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내에 두는 인명구조장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비치하여야 하며 세부규격은 별표 1과 같다.

1. 구명조끼 : 1개 이상
2. 구명튜브 : 1개 이상

3. 구명줄 : 1개 이상

제6조(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규격) ①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인명구조

장비의 수납 등이 원활한 구조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함은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견고하여야 하며 쉽게 변형되지 않을 것
2. 끝면에는 반사 성능이 있는 소재를 부착하거나 점멸 기능이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상시 식별이 용이할 것
3.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할 것
4. 여닫이문이 있는 경우 문은 90° 이상 열리는 구조일 것
5. 문은 하나의 동작에 의하여 열리고 하나의 동작에 의하여 닫히는 구조일 것
6. 함의 전면에는 부분적으로 투명 소재를 사용하여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는 구조일 것

②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전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으며, 기본규격은 별표 2와 같다.

1. 설치(또는 관리)기관명, 연락처, 사물주소(위·경도 좌표)
2. 긴급 신고번호
3. 인명구조장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4.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방법 안내문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외부에 설명을 포함한 그림문자로 표시하여

야 하며, 영어 등 그 밖에 필요한 언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④ 인명구조장비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보관함의 문 개방 시 경보음과 불빛이 점등되는 장치를 함께 구비할 수 있다.

제7조(위험표지판) 위험표지판은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주변에 함께 설치할 수 있으며, 기본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유지·관리) ① 제4조에 따라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한 기관은 누구나 필요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언제든지 개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것
2. 수난인명구조장비함에 비치된 각각의 인명구조장비에는 장비별로는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시(관리기관명, 경고문구 등)를 할 것
3. 인명구조장비가 쉽게 반출될 수 있도록 보관할 것
4. 구명조끼 및 구명줄은 사용 후 물기를 제거하고 건조 후 재비치할 것
5. 구명줄은 별도의 주머니에 보관하며 휴대가 용이할 것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난인명구조장비함 현황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 지역 내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관리주체(시장·군수·구청장·농어촌공사장 등을 말한다)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점검·보수)**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난인명구조장비함과 위험안내표지판의 훼손 및 인명구조장비의 분실 방지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여름철(5월~9월) 등 필요한 시기에는 추가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 ③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및 위험안내표지판을 점검한 결과 불량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신규로 설치·교체하는 수난인명구조장비함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인명구조장비 기본규격 (제5조제3항 관련)

장비명	형 상	세부내용
구명조끼		1. 외형은 조끼형태로 반사 성능이 있는 재질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공기주입 장치 없이 물에 뜨는 성질을 가져야 한다. (70kg 초과하는 체중에도 적응성 있는 부력 성능을 가질 것) ※ 물에 24시간 이상 잠긴 후에도 95% 부력 유지 2. 외부의 도움 없이 혼자 착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3. 고정방식은 매듭을 묶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고정방식을 가져야 한다. 4. 한쪽 방향으로만 또는 안쪽에서 밖으로 명백히 착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1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뛰어 들더라도 구명조끼가 벗겨지거나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소재, 무게, 부력 성능, 착용 적합 사이즈 등의 제원을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제품에 표기하여야 한다.
구명튜브		1. 외형은 튜브형태로 외부 공기 주입 없이 물에 뜨는 성질을 가져야 한다. ※ 부력 성능을 외면에 표기할 것 2. 반사 성능이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여야 한다. 3. 염분 및 습기에 의한 부식이 없어야 한다. 4. 구명줄을 쉽게 결속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5. 구명튜브를 던지거나 조난자가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측면에는 끈이 달려 있어야 한다.
구명줄		1. 가볍고 물에 뜨는 성질을 가져야 한다. 2. 수상에서도 식별이 용이한 색상이어야 한다. 3. 두께는 6mm이상, 길이는 20m 이상이어야 한다. 4. 인장강도는 1,000kg 이상 이어야 한다.

<비고>

가. 지역 특성, 사고 발생 빈도 및 유형 등에 따라 위 규격을 포함하여 세부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제5조 제2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비치하는 인명구조장비의 종류, 수량, 규격 등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따로 정한다.

※ 형상에 관련된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정 규격과 관련이 없음

[별표 2]

수난인명구조장비함 기본규격 (제6조제2항 관련)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전면)

인명구조장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예시)

1



구조자는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Wear a life jacket.

2



구명튜브를 꺼낸다.
Take out a life ring.

3



구명줄과 구명튜브를 연결한 후 던진다.
Connect a rope and life ring, throw it.

4



물에 빠진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구조한다.
Drag out the drowning person to the safe place.

1. 본 함은 수난사고 발생 시 구조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인명구조장비함입니다.
2.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 긴급하게 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줄을 사용할 경우 제품에 표기된 장비제원,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확인한 후 인명구조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구조장비는 인명구조장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며 파손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 000-000-0000

○○소방서장 000-000-0000

긴급신고



사물주소

(위·경도 자표)

1. 재질 :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견고하여야 하며 쉽게 변형되지 않는 구조
2. 색상
 - 가. 표지판명 : 바탕은 노란색, 글자는 빨간색
 - 나. 안내글 : 바탕은 백색, 글자는 검정색
 - 다. 기관명 및 연락처 : 바탕은 노란색, 글자는 검정색
3. 반사재료 :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우수한 반사 재료를 사용하거나 야간 조명 장치를 설치하여 시인성이 좋아야 함
4. 비고 : 지역의 특성 및 사고발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추가삽입 가능

위험표지판의 기본규격 (제7조 관련)

위험안내 표지판			
이 지역은 급격한 수심변화로 익사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이오니 안전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해양경찰서장)	000-000-0000 000-000-0000	긴급신고 	사물주소 (위·경도 좌표)

1. 재질 :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견고하여야 하며 쉽게 변형되지 않는 구조
2. 색상
 - 가. 표지판명 : 바탕은 노란색, 글자는 검정색
 - 나. 경고글 : 바탕은 백색, 글자는 검정색
 - 다. 기관명 및 연락처 : 바탕은 백색, 글자는 검정색
3. 글꼴
 - 가. 위험안내 표지판 : HY견고딕(검정색)
 - 나. 경 고 글 : HY울릉도M(검정색)
 - 다. 기관명 및 연락처 : HY견고딕(검정색)
4. 반사재료 :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우수한 반사 재료를 사용하거나 야간 조명 장치를 설치하여 시인성이 좋아야 함
5. 경고글 : 지역의 특성 및 사고발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할 것(영문 등 외국어 별도 표기)